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46

발의연월일: 2020. 8. 19.

발 의 자:하영제·김희국·정동만

서일준 · 김영식 · 이 용

홍준표 · 김용판 · 홍석준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화물 물동량의 정체와 화물차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2004년 이후 신규허가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가 폐차되지 않고 양도되어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 화물차 구매로 신규허가만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소형 화물차의 공급 과잉만 가중하게 됨.

더구나 정부 지원책과 기술개발로 인해 향후 친환경 화물차가 폭발 적으로 증가해 신규허가가 남발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임.

따라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신규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 함(안 제3조제7항제1호다목).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을 "변경허가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가 등) ① ~ ⑥ (생 략)	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	7
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u>.</u>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	1
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다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	
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	
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	
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	

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u>허</u>
<u>가 또는 변경허가를</u> 신청
하는 경우

<u>-</u> <u>경허가를</u>-----

2. (생략)

⑧ ~ ⑤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 (현행과 같음)